

#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

(황순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39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09. 02.

발의의원 : 황순자, 김정옥,  
김태우, 육정미,  
윤권근, 이태손,  
전태선, 하중환,  
하시영 의원  
(9명)

## 1. 제안 이유

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
## 1. 주요 내용

- 가.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나.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라.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마. 국제문화교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- 바.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.

## 2. 참고 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 (※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간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국제문화교류”란 「국제문화교류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를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대구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**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(이하 “진흥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)**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,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시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문화협력위원회(이하 “문화협력위원회”)의 기능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협력위원회에 협의회의 기능을 포함시킬 경우 「대구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

1. 국제교류협력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
2. 대학교수 등 국제문화교류 분야 전문가
3.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**제6조(사업)**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시 및 구·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
2.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
3.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
4.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제문화교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7조(전문인력의 양성)**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·연수·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·교재의 개발 지원
2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·연수·연구 등에 대한 지원
3.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

**제8조(경비 지원)**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

사업,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·학술 사업 및 활동
2.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·관리
3.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

**제9조(포상)**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6. (생략)

7. 국제교류 및 협력

가. 국제기구·행사·대회의 유치·지원 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나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

### □ 국제문화교류 진흥법

제1조~제2조 (생략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~제6조 (생략)

제7조(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)의 설치·운영)** 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지역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- 1.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2.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,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이 조에서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·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.

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 1. 관할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
- 2. 시·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9조(전문인력의 양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·연수·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0조~제12조 (생략)**

**제13조(경비 지원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,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4조(포상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·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